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6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6.

발 의 자:정태호·김진표·김홍걸

맹성규 • 박상혁 • 양정숙

유정주 • 윤준병 • 이성만

이재정 • 이해식 • 조승래

한병도・황운하・황 희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0년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보급확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7조제3항, 제106조제1항 및 제109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 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5호, 제9호의2"를 "제5호"로, "적용하며, 제8호"를 "적용하며, 제9호의2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"로,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"를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"로 한다.

제109조제6항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
감면) ①·② (생 략)	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소기업이 「여객자동차	③
운수사업법」 제31조제1항에	
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	
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	
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	
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	
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20</u>	<u>20</u>
<u>20년 12월 31일</u> 까지 해당 자동	<u>22년 12월 31일</u>
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	
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	
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	
(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	
액을 한도로 한다)을 감면한다.	<u>.</u>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
호의2, <u>제5호, 제9호의2</u> , 제9호	<u>মা5ছ</u>

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<u>적용</u> 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다.

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전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 ~ ⑤ (생 략)

-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
- ⑦ ~ ⑨ (생 략)

<u>적용하며, 제9</u>
호의2는 2022년 12월 31일까지
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
체결된 것
<u>에만 적용하며</u>
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
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6
<u>2022년 12월 31일</u>
⑦ ~ ⑨ (혀해과 간음)